

「평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의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22년 01월 13일 지광천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2022년 01월 17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평창군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규칙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, 수사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(안 제2조)

다. 의원면직 처리시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(안 제3조 ~ 제4조)

라.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규정(안 제5조)

### 3. 검토의견

#### ○ 본 규칙안은

평창군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에 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.

#### ○ 규칙안 주요내용은

안 제2조에서는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, 수사중일 때 비위 공무원의 의원 면직처리 금지규정 명문화

안 제3조, 제4조에서는 의원면직 처리 시 비위사실여부 확인 의무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련자 문책규정 마련

안 제5조에서는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규정을 정하였습니다.

검토결과,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

### 4. 참고자료: 관계 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」